

계룡시조례 제 호

계룡시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승인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구역) ①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계룡시 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

면 명	리 명	구 역
두 마 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일원
	왕대리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일원
	입암리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일원
	농소리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유동리	계룡시 두마면 유동리 일원
	광석리	계룡시 두마면 광석리 일원
	도곡리	계룡시 두마면 도곡리 일원
	향한리	계룡시 두마면 향한리 일원
	엄사리	계룡시 두마면 엄사리 일원
	소 계	9 개리
남 선 면	남선리	계룡시 남선면 남선리 일원
	정장리	계룡시 남선면 정장리 일원
	부남리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일원
	석계리	계룡시 남선면 석계리 일원
	용동리	계룡시 남선면 용동리 일원
	소 계	5 개리

[별표2]

계룡시 동의 명칭과 구역

동명칭	구 역
금암동	계룡시 금암동 일원